|  |  |  |
| --- | --- | --- |
| **전자 입찰방법**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감찰부,  주택도농건설부, 교통운수부, 철도부,  수리부, 상무부 령  제20호  전자 입찰, 응찰 활동을 규율하고 전자 입찰, 응찰 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감찰부, 주택도농건설부, 교통운수부, 철도부, 수리부, 상무부에서《전자 입찰, 응찰 방법》과 관련 별첨을 제정하여 이에 반포하며, 2013년 5월 1일부터 시생하기로 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공업정보화부 부장  감찰부 부장  주택도농건설부 부장  교통운수부 부장  철도부 부장  수리부 부장  상무부 부장  2013년 2월 4일  **제1장 총 칙**  **제1조** 전자 입찰, 응찰 활동을 규율하고 전자 입찰, 응찰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과《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실시조례》(이하 각각《입찰법》,《입찰법 실시조례》라 함)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전자 입찰, 응찰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한다.  이 방법에서 전자 입찰, 응찰 활동이라 함은 데이터 전자문서 형식으로 전자 입찰, 응찰 시스템에 의거하여 입찰, 응찰 거래, 공공서비스 및 행정 감독활동의 일부나 전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 전자문서 형식과 페이퍼 형식의 입찰, 응찰 활동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전자 입찰, 응찰 시스템은 그 기능에 따라 거래 플랫폼과 공공서비스 플랫폼, 행정감독 플랫폼으로 나눈다.  거래 플랫폼은 데이터 전자문서 형식으로 입찰, 응찰 활동을 수행하는 정보 플랫폼이다. 공공서비스 플랫폼은 거래 플랫폼 간의 정보교환과 자원공유 수요를 충족시키고 시장주체, 행정감독부서와 사회공중에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 플랫폼이다. 행정감독 플랫폼은 행정감독부서와 감찰기관의 온라인 전자 입찰, 응찰 활동의 정보감독 플랫폼이다.  전자 입찰, 응찰 시스템의 개발, 인증, 운영에서는 이 방법 및 별첨의《전자 입찰시스템 기술규범》(이하 기술규범이라 함)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국무원 발전개혁부서에서 전국 전자 입찰, 응찰 활동에 대한 조율을 책임지고 각급 지방 인민정부 발전 개혁 부서들에서는 본 행정구역내의 전자 입찰, 응찰 활동에 대한 조율을 책임진다, 각급 인민정부의 발전개혁부서, 공업정보화부서, 주택도농건설부서, 교통운수부서, 철도부서, 수리부서, 상무부서에서는 규정된 직책분공에 따라 전자 입찰, 응찰 활동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며 법에 따라 전자 입찰, 응찰 활동의 불법행위를 조사 처리한다.  합법적으로 설립한 입찰, 응찰 거래장소 관리기구에서는 책임지고 입찰, 응찰거래장소를 독촉, 지도하여 전자 입찰, 응찰 활동을 추진하게 하며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전자 입찰, 응찰 활동의 실시를 감독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 유관부서에서는 본 행정구역내 전자 입찰, 응찰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및 관련 테스트, 인증활동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검찰기관에서는 법에 따라 전자 입찰, 응찰 활동과 관련한 감찰대상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다.  **제2장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  **제5조**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은 동일한 표준, 상호연결, 공개, 투명, 안전하고 능률적인 원칙 및 시장화, 전문화, 집약화 지향으로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제6조** 합법적으로 설립한 입찰, 응찰거래장소, 입찰자, 입찰대리기구 및 합법적으로 설립한 기타 법인기구에서는 업종, 전문유형에 따라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가에서는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 간의 평등한 경쟁을 권장한다.  **제7조**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은 이 방법과 기술규범 규정에 부합하고 하기 주요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입찰, 응찰 거래과정 전부의 온라인수행  (2) 편집, 생성, 접속, 교환, 반포와 관련한 입찰, 응찰 데이터정보 제공  (3) 행정감독부서와 감찰기관에서 법에 따라 감독을 실시하고 투서를 접수할 수 있는 감독채널  (4) 이 방법과 기술규범에서 규정한 기타 기능.  **제8조**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은 기술규범 규정에 따라 통일된 정보 분류와 코딩 표준을 집행하여 각종 전자 입찰, 응찰 정보의 상호연결과 교환. 공유, 개방을 위한 데이터 인터페이스, 공포 인터페이스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의 인터페이스는 기술상 중립을 지키고 분리개발에 필요한 각종 툴 소프트웨어와 호환접속이 가능해야 하며 기술규범 규정에 부합하는 툴 소프트웨어의 접속을 제한하거나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은 사회 공중, 시장주체의 무료 등록과 합법적으로 공개된 입찰, 응찰 정보의 무료취득을 허용하고 입찰, 응찰 활동 당사자와 행정감독부서, 감찰기관에서 각자의 직책과 등록권한에 따라 거래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10조**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은《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조례》등 관련규정에 따라 테스트하여 인증하고 테스트 인증에 통과한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은 성급 이상 전자 입찰, 응찰 공공서비스 플랫폼에 공포해야 한다,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의 서버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치해야 한다.  **제11조**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 운영기구는 합법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일정 수의 정보기술 및 입찰전담 전문인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제12조**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 운영기구는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 및 기술규범에 따라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 운행규범 및 안전 관리제도 등을 건전하게 수립하고 감독통제와 검측을 보강하며 우환을 제때에 발견하여 제거해야 한다.  **제13조**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 운영기구는 믿음직한 신분식별, 권한 컨트롤, 보호, 바이러스 방비 등 기술을 사용하여 무 수권 조작을 방지함으로써 거래플랫폼의 안전과 안정성, 믿음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14조**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 운영기구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초기 입력정보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데이터 전자문서가 왜곡, 누락되지 않고 소급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5조**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 운영기구가 어떤 방법으로도 잠재 응찰자를 제한하거나 배척해서는 아니되고 법적으로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허위날조하거나 응찰자와 내통하거나 허위날조하기 위해 응찰자에게 편이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제3장 전자 입찰**  **제16조** 입찰자나 그가 위임한 입찰대리기구는 그가 사용하는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에 등록하고 입찰자나 입찰 대리기구 이외의 제3자가 운영하는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 운영기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 내용, 서비스 질, 서비스 비용 등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서비스과정에 관련정보의 소유권 귀속, 비밀유지책임, 서류보관 등에 대해 법에 따라 약정해야 한다.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 운영기구가 기술 및 데이터의 접속세트를 이유로 잠재 응찰자에게 지정 툴 소프트에어 구입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입찰자나 그가 위임한 입찰대리기구는 자격 예심공시, 입찰공시 또는 응찰요청서에 잠재응찰자의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 방문을 위한 인터넷 주소와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법에 따라 반드시 공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상기 관련공고는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과 국가에서 지정한 입찰 공시매체에 동시에 발표해야 한다.  **제18조** 입찰자나 그가 위임한 입찰대리기구는 제때에 데이터 전자문서 형식의 자격 예심서류, 입찰서류를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에 올려 잠재 응찰자가 다운로드나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19조** 데이터 전자문서 형식의 자격 예심공고, 입찰공고, 자격 예심서류, 입찰서류 등은 표준화, 격식화해야 하는 동시에 관련법률 법규 및 국가 관련부서에서 반포한 문서기준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0조** 이 방법과 기술규범 규정에 따라 등록하는 외에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입찰, 응찰 활동 중 등록, 응찰등기 등 전치조건에서 잠재 응찰자의 자격 예심서류나 입찰서류 다운로드를 제한해서는 아니된다.  **제21조** 응찰 마감일시까지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 운영기구에서 입찰자나 그가 위임한 입찰 대리기구를 제외한 어떠한 단위나 개인에게도 자격 예심서류와 입찰 서류의 응찰자 명칭, 수량 및 공평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타정보를 누설하거나 다운로드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제22조** 입찰자가 자격 예심서류나 입찰서류를 확인 또는 수정하는 경우 확인 또는 수정한 내용을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에 뚜렷하게 공시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미 자격 예심서류나 입찰서류를 다운로드한 모든 잠재 응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장 전자 응찰**  **제23조**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 운영기구 및 그 기구와 지주 또는 관리 관계가 있어 입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당해 플랫폼에서 입찰 프로젝트에 응찰하거나 대리응찰하지 못한다.  **제24조** 응찰자는 자격 예심공고, 입찰공고 또는 응찰요청서에 명기한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에 등록해야 하며 관련정보를 진실하게 제공하여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 운영기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응찰자는 자격 예심공고, 입찰공고 또는 응찰요청서에 명시한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을 통하여 데이터 전자문서영식의 자격 예심서류나 응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26조**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에서는 응찰자의 응찰서류 오프라인 작성을 허용하고 부분별 또는 전반 암호화와 해독기능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  응찰자는 입찰서류와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의 요구에 따라 응찰서류를 작성하고 보호화해야 한다.  응찰자가 규정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하지 않은 응찰서류는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에서 접수를 거부하고 이를 제시해야 한다.  **제27조** 응찰자는 응찰 마감일 전에 응찰서류 전송을 필해야 하며 서류에 대한 보완수정을 하거나 서류를 철회할 수 있다. 응찰 마감일까지 응찰서류 전송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응찰서류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응찰 마감일을 경과하여 전송한 응찰서류는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에서 접수를 거부해야 한다.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에서 응찰자가 송달한 응찰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응찰자에게 확인통지를 하고 응찰서류를 잘 보관해야 한다. 응찰 마감일 전에 응찰서류를 보완, 수정 또는 철회하는 외에는 어떤 단위나 개인도 응찰서류를 해독, 인출하지 못한다.  **제28조** 자격예심 신청 서류의 작성, 암호화, 회부, 전송, 접수확인 등은 이 방법의 응찰서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제5장 전자 개찰, 응찰평가, 낙찰**  **제29조** 전자 개찰은 입찰서류에서 확정한 일시에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에서 공개로 진행하며 모든 응찰자는 어김없이 온라인으로 개찰에 참가해야 한다.  **제30조** 개찰 시에는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에서 자동으로 모든 응찰서류를 인출하고 입찰자와 응찰자에게 제시하여 입찰서류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온라인 해독하게 한다. 해독을 완성한 후에는 모든 응찰자에게 응찰자의 명칭, 응찰견적 및 입찰서류에서 규정한 기타내용을 공포한다.  **제31조** 응찰자의 원인으로 응찰서류를 해독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응찰서류의 철회로 간주하고 응찰자 이외의 원인으로 응찰서류를 해독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응찰서류의 철회로 간주하는 동시에 응찰자는 책임자에게 이로 하여 조성된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일부 응찰서류를 해독하지 못하여도 여타 응찰서류의 개찰을 계속할 수 있다.  입찰자는 입찰서류에서 응찰서류 해독 실패시의 구급방안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응찰서류는 입찰 서류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32조**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은 개찰기록을 생성하여 사회공중에 공포해야 한다. 단 법적으로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33조** 전자 입찰평가는 효과적인 통제 및 비밀을 유지하는 환경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가규정에 근거하여 반드시 합법적으로 설립한 입찰, 응찰 거래장소에 진입해야 하는 입찰 프로젝트는 입찰평가위원회 구성원이 합법적으로 설립한 입찰, 응찰 거래장소에서 입찰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에서 등록하여 입찰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입찰 평가과정에 응찰자가 입찰서류에 대한 확인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자와 응찰자는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에서 데이터 전자문서를 교환해야 한다.  **제34조** 입찰 평가위원회에서 입찰평가를 완료한 후에는 반드시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을 통하여 입찰자에게 데이터 전자문서형식의 입찰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5조** 법적으로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낙찰후보자와 낙찰결과는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에 공시하고 공포해야 한다.  **제36조** 낙찰자를 확정한 입찰자는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을 통하여 데이터 전자문서형식으로 낙찰자에게 낙찰통지서를 발송하는 동시에 낙찰 실패자에게 낙찰결과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입찰자는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을 통하여 데이터 전자문서형식으로 낙찰자와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제37조** 입찰자, 낙찰자 등 관련주체가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을 통해 즉시 낙찰계약서 이행상황 관련정보를 제출하도록 권장한다.  **제38조** 자격 예심신청 서류의 해독, 개방, 평심, 결과통지서 발송 등에는 입찰서류 관련 이 방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9조** 응찰자나 그 이해관계자가 합법적으로 자격 예심서류, 입찰서류, 개찰 및 입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출하거나 입찰자가 이에 회답하는 경우에는 모두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제40조** 입찰, 응찰 활동에서 하기 데이터 전자문서는《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 법》및 입찰문서의 요구에 따라 서명하고 전자문서로 보관해야 한다.  (1) 자격 예심공고, 입찰공고 또는 응찰 요청서  (2) 자격 예심서류, 입찰서류 및 그에 대한 확인, 보완, 수정자료  (3) 자격 예심 신청서류, 입찰 평가보고서  (4) 자격 예심보고서, 입찰 평가보고서  (5) 자격 예심결과 통지서와 낙찰 통지서  (6) 계약서  (7) 국가에서 규정한 기타서류.  **제6장 정보공유와 공공서비스**  **제41조**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에서는 법에 따라 하기 주요정보를 적시에 공포해야 한다.  (1) 입찰자의 명칭, 주소, 연락인과 연락방법  (2) 입찰 프로젝트의 명칭, 내용의 범위, 규모, 자금출처, 주요 기술요구  (3) 입찰 대리기구의 명칭, 자격, 프로젝트 책임자와 연락방법  (4) 응찰자의 명칭, 자질과 허가범위, 프로젝트 책임자  (5) 낙찰자의 명칭, 낙찰금액, 계약체결일자, 계약기간  (6) 국가에서 규정한 공고, 공시 및 기술 규범규정 공포 및 교환 등 기타 정보.  입찰, 응찰 당사자를 권장하여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을 통해 프로젝트 수행의 질, 기간, 결산금액 등 계약서 이행상황을 공포하도록 한다.  **제42조** 각급 인민정부 관련부서들에서는《중화인민공화국 정부정보 공개조례》등의 규정에 따라 본 부서 웹사이트에 하기 정보를 공포하고 그 다운로드를 허용해야 한다.  (1) 관련 법률, 법규, 규정제도와 규범화한 서류  (2) 관련 공사나 서비스 자격증서 또는 화물의 생산이나 경영허가증 취득 단위의 명칭, 경영범위, 연차검사상황  (3) 관련 직명이나 직업자격을 취득한 종업원의 성명, 전자 증서코드  (4)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리 결정과 입찰, 응찰 과정의 투서 처리상황  (5) 법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공상행정, 세무, 금융 등 관련정보.  **제43조** 구를 설치한 시급이상 인민정부의 발전개혁부서에서는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정부에서 주도하고 공동으로 구축하여 공유하는 공익성 서비스원칙에 따라 자기지역의 통일적인 전자 입찰, 응찰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여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 입찰, 응찰활동 당사자, 사회공중 및 행정감독부서, 감찰기관에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제44조** 전자 입찰, 응찰 공공서비스 플랫폼은 이 방법의 기술규범규정에 따라 하기 주요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각급 인민정부 및 그 사이트에 링크하여 관련 법률, 법규, 규정제도 및 규범서류, 행정허가나 행정처리 결정, 시장 감독관리와 서비스관련 정보를 수집, 정합, 반포하는 기능  (2)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과 국가에서 규정한 공고매체와 연결하여 이 방법 제41조에서 규정한 정보를 교환, 정합, 발표하는 기능  (3) 합법적으로 설립한 입찰평가전문가뱅크와 연결하여 자원을 공유하는 기능  (4) 각종 전자인증 서비스기구 데이터 증서와의 호환성 기능  (5) 행정감독부서와 감찰기관의 법적 감독, 감찰 실시를 위해 제공하는 감독루트기능  (6) 각종 관련 데이터정보를 정합, 분석하고 입찰, 응찰시장의 운행상황과 관련 시장주체의 업적과 신용상황을 다이내믹 반영하는 기능.  공공서비스 플랫폼에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공공서비스 플랫폼에서는 이 방법 제8조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을 동시에 준수해야 한다.  **제45조**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은 반드시 이 방법과 기술규범의 규정에 따라 임의의 전자 입찰, 응찰 공공서비스 플랫폼에 등록하고 적시에 전자 입찰, 응찰 공공서비스 플랫폼에 이 방법 제41조에서 규정한 정보 및 쌍방이 협상하여 확정한 기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전자 입찰, 응찰 공공서비스 플랫폼은 이 방법과 기술규범의 규정과 데이터 인터페이스, 공시 인터페이스 개방요구에 따라 제때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과 입찰, 응찰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쌍방이 상의하여 확정한 기타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전자 입찰, 응찰 공공 서비스플랫폼은 이 방법과 기술규범 규정 및 데이터 인터페이스와 공시 인터페이스 개방요구에 따라 직전상급 전자 입찰, 응찰 공공서비스 플랫폼과 연결하여 등록하고 적시에 이 방법 제44조에서 규정한 정보 및 쌍방이 협상하여 확정한 기타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전자 입찰, 응찰 공공서비스 플랫폼은 사회공중과 시장주체의 무료등록과 법적으로 공개한 입찰, 응찰정보의 무료취득을 허용해야 하며 입찰자, 응찰자, 행정 감독관리부서, 감찰기관에 각자의 직책과 등록권한에 따라 등록하여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7장 감독 관리**  **제46조** 전자 입찰, 응찰 활동과 관련 주체는 행정감독부서와 감찰기관에 합법적으로 실시하는 감독과 감찰을 스스로 접수해야 한다.  **제47조** 행정 감독부서와 감찰기관에서는 전자정무 구축에 결부시켜 전자 입찰, 응찰에 대한 감독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관련 법률 법규와 규정제도, 행정감독의 의거, 직책권한, 감독 단계와 절차, 기한, 정보교환 요구와 연락방식 등의 관련내용을 정하여 발표해야 한다.  **제48조**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과 공공서비스 플랫폼은 이 방법과 기술규범 규정에 따라 행정감독 플랫폼에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개방하고 인터페이스요구를 공포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접속하여 입찰, 응찰 정보를 즉시 교환하고 공포해야 한다.  행정감독 플랫폼은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개방하고 데이터 인터페이스 요구를 공포하며 이미 검측을 거쳐 인정을 받은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과 공공서비스 플랫폼에서 그와 접속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동시에 이 방법 제8조 내지 제15조의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해야 한다.  **제49조**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에서는 법에 따라 전자 입찰, 응찰 업무직원의 직책권한을 설정하고 입찰, 응찰의 과정, 데이터정보의 출처 및 매 단계의 조작시간, 인터넷 주소와 담당임직원을 진실하게 기록하며 전자서류 보관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전자 입찰, 응찰 공공서비스 플랫폼은 교환한 데이터정보의 출처와 시간을 기록하여 공포하고 전자서류를 백업해야 한다.  어떤 단위나 개이든지 전자 입찰, 응찰활동의 정보를 위조, 개찬하거나 훼손해서는 아니된다.  **제50조** 행정감독부서, 감찰기관과 그 업무직원은 직책을 이행하는 외에 전자 입찰, 응찰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며 관련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1조** 응찰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전자 입찰, 응찰활동이 관련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행정 감독플랫폼을 통해 투서해야 한다.  **제52조** 행정감독부서나 감찰기관에서 법에 따라 입찰, 응찰활동을 감독하거나 투서를 처리하는 경우에 그 플랫폼에 행정 감독지령이나 감찰지령을 발표하였다면 입찰, 응찰활동의 당사자와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 공공서비스 플랫폼의 운영기구에서는 이를 집행하여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사에 협력해야 한다.  **제8장 법적 책임**  **제53조** 전자 입찰, 응찰 시스템에 하기 상황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에 교부하지 못하게 하며 이미 운영하기 시작한 경우에는 운영을 정지해야 한다.  (1) 이 방법 및 기술규범에서 규정한 주요기능을 갖추지 못한 상황  (2) 행정감독부서와 감찰기관에 감독통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  (3) 통일적인 정보 분류 및 코딩 표준을 집행하지 않은 상황  (4)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개방하지 않고 접속요구를 공포하지 않은 상황  (5) 규정대로 등록, 접속하지 않고 정보를 교환, 공포하지 않은 상황  (6) 규정된 기술 및 안전 보장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  (7)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측, 인증을 받지 않은 상황.  **제54조** 입찰자나 전자 입찰, 응찰 시스템 운영기구에 하기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잠재 응찰자를 제한, 배척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입찰, 응찰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기술수단을 이용하여 동등한 권한을 가진 시장주체에게 부동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황  (2) 사회공중, 시장주체의 무료등록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취득을 거부하는 상황  (3) 규정을 위반하고 등록, 응찰신청의 전제조건을 설치한 상황  (4) 고의로 분리 개발되고 기술규범 규정에 부합하는 도구 소프트웨어의 호환, 접속을 거부하는 상황  (5) 입찰서류 제출, 해독에 고의로 장애를 설치하는 상황.  **제55조**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 운영기구에 하기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규정을 위반하고 응찰자로부터 등록비용을 수취하는 상황  (2) 지정된 도구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도록 응찰자를 강요하는 상황  (3) 입찰, 응찰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기타상황.  **제56조** 전자 입찰, 응찰 시스템 운영기구에서 이미 응찰서류를 취득한 잠재 응찰자의 명칭, 수량, 응찰서류의 내용 또는 응찰서류의 평의 심사, 비교정보 및 공평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 응찰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 입찰, 응찰 법 제52조 입찰자 비밀 누설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처벌한다.  **제57조** 입찰, 응찰 활동당사자와 전자 입찰, 응찰 시스템 운영기구가 입찰자, 응찰자와 결탁하여 응찰하도록 협조한 경우 입찰, 응찰 법 제53조와 입찰, 응찰 법 실시조례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8조** 입찰, 응찰활동 당사자와 전자 입찰, 응찰 시스템 운영기구가 입찰, 응찰 정보를 위조, 개찬, 훼손하였거나 기타방법으로 허위조작을 한 경우 입찰, 응찰 법 제54조와 입찰, 응찰 법 실시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9조** 전자 입찰, 응찰 시스템 운영기구가 이 방법과 기술규범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기 입력정보 검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입찰, 응찰 당사자의 손실을 조성한 경우 상응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60조** 유관 행정감독부서와 그 업무직원이 직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전자 입찰, 응찰활동을 불법 간섭한 경우 관련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9장 부 칙**  **제61조** 입찰, 응찰협회는 관련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 응찰활동에 대한 자율관리와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제62조** 전자 입찰, 응찰의 일부단계에서 페이퍼 문서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찰문서에서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 페이퍼문서와 데이터 전자문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데이터 전자문서에 준한다.  **제63조** 이 방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 법규, 규정제도에 따라 집행한다.  **제64조** 이 방법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해석한다.  **제65조** 기술규범은 이 방법의 별첨으로서 이 방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66조** 이 방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전자 입찰, 응찰 시스템 기술규범-제1부분》  http://www.ndrc.gov.cn/zcfb/zcfbl/2013ling/W020130220338847842812.pdf |  | **电子招标投标办法**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工业和信息化部、监察部、住房和城乡建设部、交通运输部、铁道部、  水利部、商务部令第20号  为了规范电子招标投标活动，促进电子招标投标健康发展，国家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部、监察部、住房城乡建设部、交通运输部、铁道部、水利部、商务部联合制定了《电子招标投标办法》及相关附件，现予发布，自2013年5月1日起施行。  国家发展改革委主任：张平  工业和信息化部部长：苗圩  监察部部长：马馼  住房城乡建设部部长：姜伟新  交通运输部部长：杨传堂  铁道部部长：盛光祖  水利部部长：陈雷  商务部部长：陈德铭  2013年2月4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规范电子招标投标活动，促进电子招标投标健康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实施条例》（以下分别简称招标投标法、招标投标法实施条例），制定本办法。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进行电子招标投标活动，适用本办法。  　本办法所称电子招标投标活动是指以数据电文形式，依托电子招标投标系统完成的全部或者部分招标投标交易、公共服务和行政监督活动。  　　数据电文形式与纸质形式的招标投标活动具有同等法律效力。  **第三条** 电子招标投标系统根据功能的不同，分为交易平台、公共服务平台和行政监督平台。  　　交易平台是以数据电文形式完成招标投标交易活动的信息平台。公共服务平台是满足交易平台之间信息交换、资源共享需要，并为市场主体、行政监督部门和社会公众提供信息服务的信息平台。行政监督平台是行政监督部门和监察机关在线监督电子招标投标活动的信息平台。  　　电子招标投标系统的开发、检测、认证、运营应当遵守本办法及所附《电子招标投标系统技术规范》（以下简称技术规范）。  **第四条** 国务院发展改革部门负责指导协调全国电子招标投标活动，各级地方人民政府发展改革部门负责指导协调本行政区域内电子招标投标活动。各级人民政府发展改革、工业和信息化、住房城乡建设、交通运输、铁道、水利、商务等部门，按照规定的职责分工，对电子招标投标活动实施监督，依法查处电子招标投标活动中的违法行为。  依法设立的招标投标交易场所的监管机构负责督促、指导招标投标交易场所推进电子招标投标工作，配合有关部门对电子招标投标活动实施监督。  省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对本行政区域内电子招标投标系统的建设、运营，以及相关检测、认证活动实施监督。  监察机关依法对与电子招标投标活动有关的监察对象实施监察。    **第二章 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  **第五条** 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按照标准统一、互联互通、公开透明、安全高效的原则以及市场化、专业化、集约化方向建设和运营。  **第六条** 依法设立的招标投标交易场所、招标人、招标代理机构以及其他依法设立的法人组织可以按行业、专业类别，建设和运营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国家鼓励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平等竞争。  **第七条** 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应当按照本办法和技术规范规定，具备下列主要功能：  　　（一）在线完成招标投标全部交易过程；  　　（二）编辑、生成、对接、交换和发布有关招标投标数据信息；  　　（三）提供行政监督部门和监察机关依法实施监督和受理投诉所需的监督通道；  　　（四）本办法和技术规范规定的其他功能。  **第八条** 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应当按照技术规范规定，执行统一的信息分类和编码标准，为各类电子招标投标信息的互联互通和交换共享开放数据接口、公布接口要求。  　　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接口应当保持技术中立，与各类需要分离开发的工具软件相兼容对接，不得限制或者排斥符合技术规范规定的工具软件与其对接。  **第九条** 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应当允许社会公众、市场主体免费注册登录和获取依法公开的招标投标信息，为招标投标活动当事人、行政监督部门和监察机关按各自职责和注册权限登录使用交易平台提供必要条件。  **第十条** 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等有关规定进行检测、认证，通过检测、认证的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应当在省级以上电子招标投标公共服务平台上公布。  　　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服务器应当设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  **第十一条** 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运营机构应当是依法成立的法人，拥有一定数量的专职信息技术、招标专业人员。  **第十二条** 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运营机构应当根据国家有关法律法规及技术规范，建立健全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规范运行和安全管理制度，加强监控、检测，及时发现和排除隐患。  **第十三条** 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运营机构应当采用可靠的身份识别、权限控制、加密、病毒防范等技术，防范非授权操作，保证交易平台的安全、稳定、可靠。  **第十四条** 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运营机构应当采取有效措施，验证初始录入信息的真实性，并确保数据电文不被篡改、不遗漏和可追溯。  **第十五条** 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运营机构不得以任何手段限制或者排斥潜在投标人，不得泄露依法应当保密的信息，不得弄虚作假、串通投标或者为弄虚作假、串通投标提供便利。    **第三章 电子招标**  **第十六条** 招标人或者其委托的招标代理机构应当在其使用的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注册登记，选择使用除招标人或招标代理机构之外第三方运营的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的，还应当与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运营机构签订使用合同，明确服务内容、服务质量、服务费用等权利和义务，并对服务过程中相关信息的产权归属、保密责任、存档等依法作出约定。  　　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运营机构不得以技术和数据接口配套为由，要求潜在投标人购买指定的工具软件。  **第十七条** 招标人或者其委托的招标代理机构应当在资格预审公告、招标公告或者投标邀请书中载明潜在投标人访问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的网络地址和方法。依法必须进行公开招标项目的上述相关公告应当在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和国家指定的招标公告媒介同步发布。  **第十八条** 招标人或者其委托的招标代理机构应当及时将数据电文形式的资格预审文件、招标文件加载至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供潜在投标人下载或者查阅。  **第十九条** 数据电文形式的资格预审公告、招标公告、资格预审文件、招标文件等应当标准化、格式化，并符合有关法律法规以及国家有关部门颁发的标准文本的要求。  **第二十条** 除本办法和技术规范规定的注册登记外，任何单位和个人不得在招标投标活动中设置注册登记、投标报名等前置条件限制潜在投标人下载资格预审文件或者招标文件。  **第二十一条** 在投标截止时间前，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运营机构不得向招标人或者其委托的招标代理机构以外的任何单位和个人泄露下载资格预审文件、招标文件的潜在投标人名称、数量以及可能影响公平竞争的其他信息。  **第二十二条** 招标人对资格预审文件、招标文件进行澄清或者修改的，应当通过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以醒目的方式公告澄清或者修改的内容，并以有效方式通知所有已下载资格预审文件或者招标文件的潜在投标人。    **第四章 电子投标**  **第二十三条** 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的运营机构，以及与该机构有控股或者管理关系可能影响招标公正性的任何单位和个人，不得在该交易平台进行的招标项目中投标和代理投标。  **第二十四条** 投标人应当在资格预审公告、招标公告或者投标邀请书载明的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注册登记，如实递交有关信息，并经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运营机构验证。  **第二十五条** 投标人应当通过资格预审公告、招标公告或者投标邀请书载明的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递交数据电文形式的资格预审申请文件或者投标文件。  **第二十六条** 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应当允许投标人离线编制投标文件，并且具备分段或者整体加密、解密功能。  　　投标人应当按照招标文件和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的要求编制并加密投标文件。  　　投标人未按规定加密的投标文件，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应当拒收并提示。  **第二十七条** 投标人应当在投标截止时间前完成投标文件的传输递交，并可以补充、修改或者撤回投标文件。投标截止时间前未完成投标文件传输的，视为撤回投标文件。投标截止时间后送达的投标文件，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应当拒收。  　　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收到投标人送达的投标文件，应当即时向投标人发出确认回执通知，并妥善保存投标文件。在投标截止时间前，除投标人补充、修改或者撤回投标文件外，任何单位和个人不得解密、提取投标文件。  **第二十八条** 资格预审申请文件的编制、加密、递交、传输、接收确认等，适用本办法关于投标文件的规定。    **第五章 电子开标、评标和中标**  **第二十九条** 电子开标应当按照招标文件确定的时间，在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上公开进行，所有投标人均应当准时在线参加开标。  **第三十条** 开标时，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自动提取所有投标文件，提示招标人和投标人按招标文件规定方式按时在线解密。解密全部完成后，应当向所有投标人公布投标人名称、投标价格和招标文件规定的其他内容。  **第三十一条** 因投标人原因造成投标文件未解密的，视为撤销其投标文件；因投标人之外的原因造成投标文件未解密的，视为撤回其投标文件，投标人有权要求责任方赔偿因此遭受的直接损失。部分投标文件未解密的，其他投标文件的开标可以继续进行。  　　招标人可以在招标文件中明确投标文件解密失败的补救方案，投标文件应按照招标文件的要求作出响应。  **第三十二条** 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应当生成开标记录并向社会公众公布，但依法应当保密的除外。  **第三十三条** 电子评标应当在有效监控和保密的环境下在线进行。  　　根据国家规定应当进入依法设立的招标投标交易场所的招标项目，评标委员会成员应当在依法设立的招标投标交易场所登录招标项目所使用的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进行评标。  　　评标中需要投标人对投标文件澄清或者说明的，招标人和投标人应当通过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交换数据电文。  **第三十四条** 评标委员会完成评标后，应当通过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向招标人提交数据电文形式的评标报告。  **第三十五条** 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中标候选人和中标结果应当在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进行公示和公布。  **第三十六条** 招标人确定中标人后，应当通过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以数据电文形式向中标人发出中标通知书，并向未中标人发出中标结果通知书。  　　招标人应当通过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以数据电文形式与中标人签订合同。  **第三十七条** 鼓励招标人、中标人等相关主体及时通过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递交和公布中标合同履行情况的信息。  **第三十八条** 资格预审申请文件的解密、开启、评审、发出结果通知书等，适用本办法关于投标文件的规定。  **第三十九条** 投标人或者其他利害关系人依法对资格预审文件、招标文件、开标和评标结果提出异议，以及招标人答复，均应当通过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进行。  **第四十条** 招标投标活动中的下列数据电文应当按照《中华人民共和国电子签名法》和招标文件的要求进行电子签名并进行电子存档：  　　（一）资格预审公告、招标公告或者投标邀请书；  　　（二）资格预审文件、招标文件及其澄清、补充和修改；  　　（三）资格预审申请文件、投标文件及其澄清和说明；  　　（四）资格审查报告、评标报告；  　　（五）资格预审结果通知书和中标通知书；  　　（六）合同；  　　（七）国家规定的其他文件。    **第六章 信息共享与公共服务**  **第四十一条** 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应当依法及时公布下列主要信息：  　　（一）招标人名称、地址、联系人及联系方式；  　　（二）招标项目名称、内容范围、规模、资金来源和主要技术要求；  　　（三）招标代理机构名称、资格、项目负责人及联系方式；  　　（四）投标人名称、资质和许可范围、项目负责人；  　　（五）中标人名称、中标金额、签约时间、合同期限；  　　（六）国家规定的公告、公示和技术规范规定公布和交换的其他信息。  　　鼓励招标投标活动当事人通过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公布项目完成质量、期限、结算金额等合同履行情况。  **第四十二条** 各级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按照《中华人民共和国政府信息公开条例》等规定，在本部门网站及时公布并允许下载下列信息：  　　（一）有关法律法规规章及规范性文件；  　　（二）取得相关工程、服务资质证书或货物生产、经营许可证的单位名称、营业范围及年检情况；  　　（三）取得有关职称、职业资格的从业人员的姓名、电子证书编号；  　　（四）对有关违法行为作出的行政处理决定和招标投标活动的投诉处理情况；  　　（五）依法公开的工商、税务、海关、金融等相关信息。  **第四十三条** 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发展改革部门会同有关部门，按照政府主导、共建共享、公益服务的原则，推动建立本地区统一的电子招标投标公共服务平台，为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招标投标活动当事人、社会公众和行政监督部门、监察机关提供信息服务。  **第四十四条** 电子招标投标公共服务平台应当按照本办法和技术规范规定，具备下列主要功能：  　　（一）链接各级人民政府及其部门网站，收集、整合和发布有关法律法规规章及规范性文件、行政许可、行政处理决定、市场监管和服务的相关信息；  　　（二）连接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国家规定的公告媒介，交换、整合和发布本办法第四十一条规定的信息；  　　（三）连接依法设立的评标专家库，实现专家资源共享；  　　（四）支持不同电子认证服务机构数字证书的兼容互认；  　　（五）提供行政监督部门和监察机关依法实施监督、监察所需的监督通道；  　　（六）整合分析相关数据信息，动态反映招标投标市场运行状况、相关市场主体业绩和信用情况。  　　属于依法必须公开的信息，公共服务平台应当无偿提供。  　　公共服务平台应同时遵守本办法第八条至第十五条规定。  **第四十五条** 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应当按照本办法和技术规范规定，在任一电子招标投标公共服务平台注册登记，并向电子招标投标公共服务平台及时提供本办法第四十一条规定的信息，以及双方协商确定的其他信息。  　　电子招标投标公共服务平台应当按照本办法和技术规范规定，开放数据接口、公布接口要求，与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及时交换招标投标活动所必需的信息，以及双方协商确定的其他信息。  　　电子招标投标公共服务平台应当按照本办法和技术规范规定，开放数据接口、公布接口要求，与上一层级电子招标投标公共服务平台连接并注册登记，及时交换本办法第四十四条规定的信息，以及双方协商确定的其他信息。  　　电子招标投标公共服务平台应当允许社会公众、市场主体免费注册登录和获取依法公开的招标投标信息，为招标人、投标人、行政监督部门和监察机关按各自职责和注册权限登录使用公共服务平台提供必要条件。    **第七章 监督管理**  **第四十六条** 电子招标投标活动及相关主体应当自觉接受行政监督部门、监察机关依法实施的监督、监察。  **第四十七条** 行政监督部门、监察机关结合电子政务建设，提升电子招标投标监督能力，依法设置并公布有关法律法规规章、行政监督的依据、职责权限、监督环节、程序和时限、信息交换要求和联系方式等相关内容。  **第四十八条** 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和公共服务平台应当按照本办法和技术规范规定，向行政监督平台开放数据接口、公布接口要求，按有关规定及时对接交换和公布有关招标投标信息。  　　行政监督平台应当开放数据接口，公布数据接口要求，不得限制和排斥已通过检测认证的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和公共服务平台与其对接交换信息，并参照执行本办法第八条至第十五条的有关规定。  **第四十九条** 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应当依法设置电子招标投标工作人员的职责权限，如实记录招标投标过程、数据信息来源，以及每一操作环节的时间、网络地址和工作人员，并具备电子归档功能。  　　电子招标投标公共服务平台应当记录和公布相关交换数据信息的来源、时间并进行电子归档备份。  　　任何单位和个人不得伪造、篡改或者损毁电子招标投标活动信息。  **第五十条** 行政监督部门、监察机关及其工作人员，除依法履行职责外，不得干预电子招标投标活动，并遵守有关信息保密的规定。  **第五十一条** 投标人或者其他利害关系人认为电子招标投标活动不符合有关规定的，通过相关行政监督平台进行投诉。  **第五十二条** 行政监督部门和监察机关在依法监督检查招标投标活动或者处理投诉时，通过其平台发出的行政监督或者行政监察指令，招标投标活动当事人和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公共服务平台的运营机构应当执行，并如实提供相关信息，协助调查处理。    **第八章 法律责任**  **第五十三条** 电子招标投标系统有下列情形的，责令改正；拒不改正的，不得交付使用，已经运营的应当停止运营。  　　（一）不具备本办法及技术规范规定的主要功能；  　　（二）不向行政监督部门和监察机关提供监督通道；  　　（三）不执行统一的信息分类和编码标准；  　　（四）不开放数据接口、不公布接口要求；  　　（五）不按照规定注册登记、对接、交换、公布信息；  　　（六）不满足规定的技术和安全保障要求；  　　（七）未按照规定通过检测和认证。  **第五十四条** 招标人或者电子招标投标系统运营机构存在以下情形的，视为限制或者排斥潜在投标人，依照招标投标法第五十一条规定处罚。  　　（一）利用技术手段对享有相同权限的市场主体提供有差别的信息；  　　（二） 拒绝或者限制社会公众、市场主体免费注册并获取依法必须公开的招标投标信息；  　　（三）违规设置注册登记、投标报名等前置条件；  　　（四）故意与各类需要分离开发并符合技术规范规定的工具软件不兼容对接；  　　（五）故意对递交或者解密投标文件设置障碍。  **第五十五条** 电子招标投标交易平台运营机构有下列情形的，责令改正，并按照有关规定处罚。  　　（一）违反规定要求投标人注册登记、收取费用；  　　（二）要求投标人购买指定的工具软件；  　　（三）其他侵犯招标投标活动当事人合法权益的情形。  **第五十六条** 电子招标投标系统运营机构向他人透露已获取招标文件的潜在投标人的名称、数量、投标文件内容或者对投标文件的评审和比较以及其他可能影响公平竞争的招标投标信息，参照招标投标法第五十二条关于招标人泄密的规定予以处罚。  **第五十七条** 招标投标活动当事人和电子招标投标系统运营机构协助招标人、投标人串通投标的，依照招标投标法第五十三条和招标投标法实施条例第六十七条规定处罚。  **第五十八条** 招标投标活动当事人和电子招标投标系统运营机构伪造、篡改、损毁招标投标信息，或者以其他方式弄虚作假的，依照招标投标法第五十四条和招标投标法实施条例第六十八条规定处罚。  **第五十九条** 电子招标投标系统运营机构未按照本办法和技术规范规定履行初始录入信息验证义务，造成招标投标活动当事人损失的，应当承担相应的赔偿责任。  **第六十条** 有关行政监督部门及其工作人员不履行职责，或者利用职务便利非法干涉电子招标投标活动的，依照有关法律法规处理。    **第九章 附 则**  **第六十一条** 招标投标协会应当按照有关规定，加强电子招标投标活动的自律管理和服务。  **第六十二条** 电子招标投标某些环节需要同时使用纸质文件的，应当在招标文件中明确约定；当纸质文件与数据电文不一致时，除招标文件特别约定外，以数据电文为准。  **第六十三条** 本办法未尽事宜，按照有关法律、法规、规章执行。  **第六十四条** 本办法由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会同有关部门负责解释。  **第六十五条** 技术规范作为本办法的附件，与本办法具有同等效力。  **第六十六条** 本办法自2013年5月1日起施行。    附件：《电子招标投标系统技术规范—第1部分》  <http://www.ndrc.gov.cn/zcfb/zcfbl/2013ling/W020130220338847842812.pdf> |